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곽향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1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곽향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영철,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박 석,
서상열, 신복자, 유만희,
유정희, 윤영희, 윤종복,
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
이영실, 이종환, 이효원,
최민규, 황유정, 황철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나 합계출산율은 0.55명으로 최하위인 지역으로,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밀도 상승, 과잉 경쟁,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, 그에 따라 발생하는 초산 연령 상승과 동반하여 난임 또한 증가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, 정작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의지해야 하는 치료 전 과정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시술종류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, 남성 공무원의 경우 정자 채취일 단 하루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 배우자 치료 시 동반할 수 있는 휴가 근거가 전무하며, 이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공무원의 휴가 여건 부족을 지적한 바 있음
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행 휴가를 허용하는 조례를 신설해 어려운 치료 과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해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난임치료 시술 공무원 및 배우자의 특별휴가 인정(안 제 29조 제1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9항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8항(중전의 제17항) 본문 중 “제16항에”를 “제17항에”로, “제16항제1호”를 “제17항제1호”로 한다.

-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,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때마다 제10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특별휴가) ① ~ ⑧ (생략)	제29조(특별휴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은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	⑨ ----- ----- 제8항 ----- ----- ----- --.
⑩ (생략) <u><신 설></u>	⑩ (현행과 같음)
⑪ ~ ⑬ (생략)	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,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10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.
⑭ ~ ⑯ (생략)	⑫ ~ ⑰ (현행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)
⑰ 제1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, 자녀(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)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(제16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	⑱ 제17항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17항제1호----- ----- -----

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)수에 1
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
휴가 일수로 한다. 다만, 장애인
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
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
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
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
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
수로 한다.

⑬ (생략)

-----.

-----.

⑭ (현행 제18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9조(특별휴가)제11항에 “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,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때마다 제10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”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재정 분석과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이설화

☎ 02-2180-7952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